

# 1일 최대 학습시간 관련 모니터링 변경사항 안내

<'25. 12. 9.(화), 한국산업인력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부>

## 1. 모니터링 변경 개요

- **(목적)** 1일 최대 학습시간(8시간)에 대한 규정 준수 사항 점검 강화
- **(내용)** 훈련기관이 1일 최대 학습시간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학습 관리시스템(LMS)를 마련하고 훈련을 운영하는지 점검

|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→ |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일 최대 <b>8차시</b><br>초과 학습 여부 확인 |   | 1일 최대 <b>8시간</b><br>초과 학습 여부 확인 |

- **(근거)**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1조,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
  -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의 지원금 지급과 과정인정을 위한 기준으로
    - ①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성적 및 ② 80% 이상의 '학습 진도율',
    - ③ **1일 최대 학습시간 기준(8시간) 준수** 등을 요구하고 있음

### [ 1일 최대 학습시간 관련 규정 ]

-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11조(지원금 지급 기준 등) 제1항제2호나목 나.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. 다만, **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**
-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(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요건) 제3항제2호 2. **최대학습량(일일 최대 8시간)**을 훈련생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주기적으로 훈련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독려할 것

- **(적용 대상 훈련 유형)** 사업주 인터넷원격 및 스마트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 인터넷원격
  - ※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특화 훈련과정 중 K-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는 개별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 적용(과정별 1일 최대 16차시까지 강의 수강 가능)

## 2. 주요 내용

□ **(변경 사유)** 1일 최대 학습시간에 대한 모니터링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규정에 근거한 훈련 운영 도모

- 일부 과정은 차시별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1일 최대 8차시까지 학습을 허용하는 경우, **훈련생의 1일 총 학습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있음**

\* 과정심사 시 인정받는 차시별 학습시간은 최소 25분~1시간 이상으로 상이함

□ **(변경 세부 내용)** 1일 최대 **8시간** 초과 학습 여부 확인

### [ 1일 최대 학습시간 관련 운영 방침 ]

- 1일 학습시간은 **8시간**을 초과할 수 없음

다만,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일 학습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"1일 8차시 진도제한" 방식을 유지할 수 있음

- (1) (과정인정요건 점검) 1일 학습시간이 **8시간**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제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확인
- (2) (정기 모니터링) 월별 모니터링에서 수료자의 1일 학습시간이 **8시간**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규정 위반 사항 모니터링 실시(신규 분석유형 추가)

### <모니터링 단계별 세부 기준>

| 구분        | 기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과정인정요건 점검 | LMS에 1일 최대 <b>8차시</b> 초과 학습 방지 기능 설정 확인 | LMS에 1일 최대 <b>8시간</b> 초과 학습 방지 기능 설정 확인 |
| 정기 모니터링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일 <b>8시간</b> 초과 학습 여부 확인               |

□ **(적용 시점)** 모니터링 단계별 적용 시점

- (1) (과정인정요건 점검) '26. 2. 1. 이후 과정인정요건 점검부터 적용
- (2) (정기 모니터링) 분석 유형 개발 이후 적용 시점 결정(추후 공지 예정)

### 3. 훈련기관 조치 사항

- (조치 내용) 1일 최대 학습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습관리시스템(LMS) 개선 조치
- (조치 기한) '26. 1. 31.까지
  - \* '26. 2. 1. 이후 훈련 실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
  - \*\* 조치 기한 내에 훈련기관 LMS에 자체적으로 반영하되(공단에 별도 확인 요청 불필요) 향후 과정 변경인정 점검, 모니터링 및 지도·감독에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

### 4. 향후 계획

- 1일 8시간 초과 학습 여부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실시 예정('26. 上)
  - 훈련기관은 '26. 2. 1.부터 훈련생의 1일 누적 학습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